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2. 10. 7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양송이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 
제1차 운영위원회(2022. 9. 28.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양송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('22.1.13.시행)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신설(안 제3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충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자 상시 운영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송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9월

발의자: 양송이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되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 신설(안 제31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중 제8항을 “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29조를 준용한다.”로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 원수) ① ~ ⑦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31조(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 원수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,</u> <u>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</u> <u>원의 임기는 제29조를 준용한</u> <u>다.</u>